

① (공정위원회고시)

| 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2-2)   |   |    |
|--|---|----|
| 분쟁유형   | 해결기준  | 비고 |
| 5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<br>- 개시일 이전<br><br>- 개시일 이후  | ○ 총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<br><br>○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 |    |
| ○ 사은품 반환<br>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<br>. 사은품 미사용 시 : 해당 사은품 반환<br>. 사은품 사용 시 :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울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(단,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.)<br>.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: 현존상태로 반환<br>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.해지 시: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.<br><br>○ 체육시설업<br>- 수영장, 체력단련장, 테니스장, 대중종합체육시설업, 골프연습장 등<br>○ 레저용역업<br>- 이벤트 주관, 주말농장, 영화예매 등<br>○ 할인회원권업<br>-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,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|   |    |

## ② (청소년시설 관리·운영)

### (2) 사용료의 감면(규칙 제6조)

-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, 8조 5항 및 6항에서 정한 감면은 조항규정에 따라 감면하되 운영단체는 이와 관련한 증빙 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.
- 상위법의 내용에 감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의 내용을 따른다.

제8조(사용료 등)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, 강습료 및 이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. <개정 2009.5.28., 2015.10.8.>

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09.5.28., 2012.7.30., 2015.10.8.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또는 수급자의 가족 중 청소년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4.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
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

⑤ 운영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. <개정 2009.5.28., 2015.10.8.>

⑥ 제1항에 불구하고 운영자는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 이 경우 다동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. <신설 2009.5.28., 2015.10.8.>

### (3) 사용료의 반환(규칙 제7조)

-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영단체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가목 혹은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가.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

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
 나. 프로그램의 취소·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 환 금 액  |
|--|--|
| 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         |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 |
| 2.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| 납부 이용료의 전액 반환  |
| 3.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|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[별표 2] 중 “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” 및 “학원운영업, 평생교육시설운영업”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|
| 4.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|  |

## 8. 시설물 및 안전관리

### 1) 시설물 유지관리

#### ○ 청소년시설 유형별 법적기준에 따른 필수공간 유지

- 청소년시설을 청소년활동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기관이 입주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
- 청소년시설 설치 시 허가받은 공간을 임의로 축소 및 폐쇄하는 것을 금지함
- 청소년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청소년시설에 사무실이나 활동공간을 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

#### ○ 청소년시설의 금연구역지정

-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공간을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도록 지정함
-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시설 공간 뿐만 아니라 시설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(별도의 흡연구역 설치 가능)